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45 발의연월일: 2020. 11. 23.

발 의 자:이채익・김영식・권명호

윤영석 • 박성민 • 박완수

김희곤 · 조경태 · 구자근

金炳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에 있어서 '향토'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,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,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을 「예비군법」으로, '향토예비군'을 '예비군'으로 개정한 바 있음.

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'향토방위'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 영하여 '지역방위'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 및 제23조제4항). 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8호 중 "향토방위(鄉土防衛)"를 "지역방위(地域防衛)"로 한다.

제23조제4항 중 "향토방위업무"를 "지역방위업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 등) ① 이 법에서 사	제2조(정의 등) ①
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	
다.	- 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"상근예비역"이란 징집에 의	8
하여 현역병으로 입영(入營)	
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	
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	
된 후 <u>향토방위(鄕土防衛)</u> 와	<u>지역방위(地域防衛)</u>
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	
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	
람을 말한다.	
9. ~ 19. (생 략)	9. ~ 1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상근예비역의 복무) ① ~	제23조(상근예비역의 복무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	4
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	
<u>향토방위업무</u> 를 수행하는 군부	<u>지역방위업무</u>
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	
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.	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